

제 2 장

반론보도 게재 사례

제2장 반론보도 게재 사례

사례 18

2018서울조정115·116 정정·반론청구

아파트 분양가가 과도하다는 비판 보도에 대해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라는 내용을 반론보도하기로 합의한 사례

보도내용

- 지상파 방송사인 피신청인은 뉴스프로그램에서 신청인 주택건설사업자가 임대아파트의 분양 전환 시 분양가를 과도하게 책정하는 등 폭리를 취해왔다고 비판 보도한 바 있다.

신청취지

- 신청인은 분양전환 가격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다수 소송이 진행 중이고, 최종심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며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청구하였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분양전환 가격이 적절한지와 관련하여 다수의 소송이 진행 중이며, 분양가격이 정당하다는 판결들과 그렇지 않다는 판결이 엇갈리게 이루어지고 있어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바로잡는다

〈신청인이 원하는 반론보도문 요지〉

- 수분양자들 간에 분양전환가격이 적절한지와 관련하여 다수의 소송이 진행 중이며, 분양가격이 정당하다는 판결들과 그렇지 않다는 판결이 엇갈리게 이루어지고 있어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고 부당히 폭리를 취한 것은 아니라고 밝혀왔다

조정결과

- 조정심리 중 신청 취지를 반론의 형식으로 피신청인 홈페이지의 조정대상보도에 이어서 게재 하는 것으로 양 당사자 간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전략] 경남 ○시의 한 아파트 단지. [중략]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부실시공 의혹과 임대아파트 고분양가 전환 논란으로 주민들의 반발은 계속돼 왔습니다.

현행법상 임대기간이 5년 혹은 10년이 지나면 입주 주민들에게 아파트를 분양하게 되는데 A사는 분양 전환 과정에서 지나치게 높은 분양가를 책정해 왔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실제로 A 임대아파트 입주주민들은 과도한 분양가 책정으로 A사가 얻은 이득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5년간 이와 관련된 소송만 100여 건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A그룹을 전격 압수수색한 검찰도 이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A사가 실제 사용 건축비가 아닌 현행법상 최대치의 건축비를 받을 수 있는 표준건축비를 적용해 분양가를 책정하는 편법을 동원해 폭리를 취해왔던 정황을 포착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A사가 임대아파트 건설을 명분으로 토지를 싼값에 구입하고 아파트 건설자금을 저금리로 대출받은 부분도 확인 중입니다. [중략]

임대아파트 사업을 발판삼아 대기업으로 급성장했지만 정작 서민들의 비판을 받아온 A사 임대아파트 폭리 문제에 대해 검찰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조정성립 후 보도문

보도내용

본 방송은 지난 ○월 ○일 [] 프로그램에서 []라는 제목으로, A사가 편법으로 분양가를 책정해 폭리를 취한 혐의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A사는 회사가 편법으로 분양가를 책정해 부당이득을 취했는지 여부에 대해 다수의 소송이 진행 중이며, 해당 하급심에서 상반된 판결이 이루어져 현재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피신청인은 ○년 ○월 ○일까지 조정대상보도의 본문 하단에 위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한다.
- 네이버,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사업자에게도 위 사항을 전송한다.



사례 19

2018서울조정592·593·594, 595·596·597(병합) 각 정정·반론·손배청구
해외투자의 실패 케이스에 관한 시사 대담 프로그램 보도에 대해 반론보도가
게재된 사례

보도내용

- 지상파 방송사인 피신청인은 한 시사대담 프로그램에서 신청인 기업이 남미의 부실한 기업을 몇 배나 비싸게 매입하고, 불필요한 회사를 끼워서 인수하는 등 수상한 투자를 펼쳤으며, 이는 전 정부의 자원외교의 일환이었다는 취지로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보도한 바 있다.

신청취지

- 신청인은 신청인 기업이 투자한 남미의 회사는 외부 투자기관의 검토 등을 거쳐 적법하게 인수한 것이며, 실패한 투자였지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투자한 것이라며 정정보도 및 반론 보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신청인이 인수한 B회사는 외부 투자기관의 인수자문 및 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 같이 인수한 C회사도 보도에 언급된 유령회사가 아니고, 이사회에서 B회사와 함께 투자 의결하였으며, 외국 계좌로 송금한 것은 C회사의 모회사에 인수대금을 적법하게 송금한 것이다
- 매각 전 유상증자는 대위 변제를 위한 것이었다

조정결과

- 조정심리 중 중재부는 반론보도 게재가 적합한 사안이라고 판단했고, 피신청인 또한 반론보도를 게재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심리 이후 양 당사자 간 반론보도를 게재하기로 협의되어 반론보도 게재 후 신청인이 신청을 취하하였다.

조정대상보도

- ▶ 진행자1 : 오늘은 지난주 타방송에서 다룬 내용인데, A사의 수상한 투자, 그런데 이 이슈가 폭발력에 비해 충분히 화제가 되지 않아 다시 다룬다. [중략]
A사 투자를 수상하다고 했는데 타방송에서 다룬 내용은 B사 인수인데 왜 이상한지 알아보자.
- ▶ 진행자2 : 어느날 갑자기 건설 이사회에서 위에서 내려왔다 가격도 찍어 ○억. 저기서 내려



왔다. 안건을 담당했던 직원들은 이 A사가 100억도 안되는 회사라고 했고 인수하면 안된다고 올렸다. 사람들은 다 알죠. 이걸 위에서 짚어서 온거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해야 된다. 그래서 진행을 했어. 그런데 이사회 진행때는 없었던 C사라는 회사를 같이 인수했다. B사에는 250억이, C사에는 550억이 들어갔다. C사는 완벽한 페이퍼 컴, 직원도 없고 유명주소만 있고 비즈니스가 없는. C사는 인수금액이 550억이다. 그리고 매각직전에 증자를 800억을 하고. B사는 D라는 자본금 80만원짜리 회사가 68억에 산다 이런 구조.

- ▶ 진행자1 : 정리하면 부실한 회사데 몇배나 뺏기해서 사준다. 살 필요 없는 회사를 사고 부실한 회사는 헐값에 팔고, 살필요 없는 회사는 뺏처리를 한다, 그러면 이 공식이 자원외교에도 적용되나? [중략]
- ▶ 진행자2 : A사의 경우는 기업평가 전에 수뇌부에서 결정돼서 내려왔다. 우리는 B사를 800억에 산다, 공시를 한다 위에서 내려와서.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걸 진행했던 건설 내부자의 고백인데 사고나서 중개수수료 300억원을 C사로 씌준다. (중개수수료를?) 800억 매매금에 수수료가 300억입니다. [중략] 쓴 사람의 증언이 재밌습니다. C사는 D국입니다. D국법인인데 이 돈이 E국으로 흐르더라. (페이퍼컴퍼니 주소는 D국인데 돈은 E국으로?) 돈이 E국으로. (돈이 E국의 누구계좌인가가 중요하다. 이걸 그 일을 진행한 내부자 증언?) 내부자 증언이고 대단한 구조다. [후략]

조정신청 후 보도문

보도내용

본 방송은 지난 ○월 ○일 [] 프로그램의 [] 코너에서 []라는 제목으로 A사가 ○에 투자한 B 회사에 대해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A사 측은 “외부 기관의 인수자문 및 검토를 거쳐 이사회에서 B사와 함께 C사에 대해 투자 의결하였고, D는 C사의 모회사로서 외국 계좌로의 송금은 같은 회사에 인수대금을 송금한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사례 20

2018서울조정1028 정정청구

모 기업 차기회장 선임과 관련한 시민단체가 특정인을 지지하고 있다는 오피니언 보도에 대해 반론보도를 게재하기로 합의한 사례

보도내용

- 인터넷신문사인 피신청인은 오피니언 보도를 통해 모 기업의 차기회장 선임 과정에 개입하려는 외부의 움직임이 있다며, 신청인 등 다수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이 참여하고 있는 모 기업 바로세우기 시민연대에서 후보 9명 중 8명에 대해 부적합 인물로 규정, 사실상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다.

신청취지

- 시민연대는 과거 해당 기업의 경영에 참여했던 인사 8명이 회장 후보로 거론되는 것을 묵과할 수 없어 반대 의사를 표하였을 뿐, 기업 측에서는 현재 후보가 몇 명인지에 대해 발표한 적이 없으며, 피신청인이 후보자를 9명으로 특정하면서 신청인이 나머지 1명을 염두에 둔 것으로 단정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하였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현재 A기업의 회장 후보가 9명이라고 단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시민연대가 반대한다고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1명의 후보를 신청인이 지지하는 것처럼 보도했으나 A기업은 후보가 몇 명인지 발표한 적이 없고 신청인 또한 특정 후보를 염두에 둔 적이 없으므로 바로잡는다

조정결과

- 조정심리 중 신청인이 회장 후보 중 특정 인물을 지지한 바 없다는 취지의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양 당사자 간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전략] 8개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이 참여하고 있는 A기업 바로세우기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최근 O기업 회장 후보로 꼽히는 인물 대부분을 부적합한 인물로 규정했다.

현재 회장 후보로 거명되는 B 사장과 C 사장, D 전 사장, E 전 사장, F 기업 대표이사 사장, G건설 대표이사 사장, H기업 전 원장, I기업 사장, 전 J기업 부회장 등 9명이다.



시민연대는 “A기업이 대일청구권 자금으로 설립된 민족기업이지만 최근 10년 동안 처절하게 망가졌다”며 J 전 부회장을 제외한 8명이 “과거 부실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A기업이 바로 서서 세계적 철강기업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시민단체나 노동단체가 A기업 회장 선임에 목소리를 내는 것은 나쁘게 볼 일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권력의 입김이 작용하거나 부정부패나 비리에 관련된 인물이 A기업 경영을 맡는 것은 누구든 나서서 막아야 한다.

하지만 시민단체나 노동단체의 역할은 거기까지다. 감시나 비판을 하는 단체가 후보 선출에 개입하게 되면 선을 넘는 일이다.

물론 시민연대가 대놓고 특정 인물을 A기업 회장 후보로 지지하고 있지는 않다. [중략]

그러나 시민연대의 주장은 오해를 살만한 여지가 적지 않다. 이 단체가 꼽는 부적격 인물을 빼면 현재 거명되는 후보군 가운데 남는 이는 J기업 전 부회장뿐이기 때문이다. [후략]

조정성립 후 보도문

보도내용

본 신문은 ○년 ○월 ○일자 [] 제하의 기사에서 ‘A기업 바로세우기 시민연대’가 차기회장 후보 9명 중 8명의 후보에 대해서만 반대의사를 표명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A기업 바로세우기 시민연대’ 참여단체 중 ‘B운동본부’ 측은 “회장 후보는 총 20명이며, 시민연대는 특정 후보를 지지한 바 없고 지지할 의사도 전혀 없다”는 입장을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피신청인은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의 기간 이내에 ○면 초기화면 상단에 제1항의 보도문 제목을 48시간 동안 노출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위 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위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한다. 또한,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피신청인은 네이버와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사업자에게도 위 사항을 전성하여 각 사업자가 게시한 기사 하단에도 동일한 내용의 반론보도문이 게재되도록 한다.



사례 21

2018서울조정1517·1518, 1519·1520(병합) 각 정정·반론청구

군대 내 사망사건을 다룬 보도에 대해 부대의 입장을 반영한 반론보도 게재로 합의한 사례

보도내용

- 종합일간지인 피신청인은 우울증을 앓던 군인이 투신해 숨졌다고 보도하면서, 배치부대가 해당 군인에 대한 신상기록을 확인하지 않아 뒤늦게서야 배려병사로 분류했고, 이후에도 관찰과 관리를 소홀히 하고 병력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취지로 지면과 온라인을 통해 보도한 바 있다.

신청취지

- 신청인 부대는 사망한 병사의 부적응 상황이 파악된 직후 정기적인 상담 및 진료를 권유했고, 사망 이후에도 유가족을 조문하고 위로하는 등 다각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취지로 정정 및 반론보도를 청구하였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 및 반론보도문 요지〉

- 해당 일병이 전입한 후 부적응 상황을 확인하여 상담관이 정기적으로 상담토록 했고, 그린캠프 입소 및 정신과 진료를 권유했으나 본인의 의사에 따라 진행되지 않은 것이다
- 사망할 당시 병가가 아닌 정기휴가 중이었다
- 수방사 보통검찰부의 최종 수사 결과 개인적 원인으로 인한 자살로 판명되었다
- 부대에서 할 수 있는 다각적 조치가 이루어졌고, 병력관리 미흡이 사망의 전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밝혀왔다

조정결과

- 중재부는 신청인 부대의 신청취지를 반론보도의 형식으로 게재하는 방안을 권유했고,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우울증을 앓던 군인이 한강에 투신해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자살 징후’를 보이는 병사에 대해 군 당국이 관리를 소홀히 해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4일 시민단체에 따르면 A일병은 입대 8개월 만에 병가를 내고 나와 서울 마포대교에서 뛰어내렸다.

[중략]

유가족에 따르면 A일병은 입대 전 정신과 진료에서 우울증과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진단과 함께 10여 차례 약물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정신질환 특성상 증상의 기복이 커 지난해 병무청의 신체검사에서는 ‘양호’ 판정이 내려졌다. 지난해 입대 이후 우울증이 다시 심해졌다. 신병교육대에서 받았던 복무적합도 검사에서도 ‘정신건강 전문가의 정밀진단 요구’ 소견이 나왔다. 한 달 뒤 2차 검사에서도 ‘정신 건강’ 부문에서 ‘주의’ 판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A일병은 ○병원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았고 수면유도제를 처방받았다.

자대 배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연대 인사장교는 인솔자인 주임원사에게 A일병이 신병교육대에서 ‘배려병사’로 지정된 자료 일체를 전달하지 않았다. A일병이 배치된 부대 또한 신상 기록을 확인하지 않은 채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고 A일병을 배려병사로 분류하지 않았다.

한 달 뒤에야 부대는 뒤늦게 A일병의 상태를 파악하고 배려병사로 분류했지만 지휘관의 적극적인 관찰과 관리가 뒤따르지 않았다.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이 A일병과의 면담에서 “가정과 연계해 관리하고, 정신과 진료와 심리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소견을 수차례 내놨음에도 중대장 등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가족과 연계한 병력 관리도 이뤄지지 않아 가족들은 A일병이 군에서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

A일병 사망 후 헌병대가 조사에 나섰고 “병력 관리에 문제점이 확인됐다”며 “폭행 및 가혹행위 등 병영 갈등 요인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과를 내놨다. 징계는 중대장과 인사과장에게 각각 ‘견책’이 내려진 게 전부였다. 이에 유족 측은 “군은 아들을 죽게 한 군인에게 솜방망이 징계만 내렸고, 유족에겐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분노하고 있다. 군 측은 “A일병 면담 시 그린캠프 입소와 정신과적 치료를 본인이 희망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정성립 후 보도문

보도내용

본지는 ○월 ○일자 ○면 [] 제목의 기사에서 ‘A일병이 배려병사로 분류됐지만 지휘관의 적극적인 관찰과 관리가 뒤따르지 않았고,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이 면담 후 가정과 연계된 관리에 대해 수차례 소견을 내놓았지만 부대에서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대는 “A일병은 병가가 아닌 정기휴가 중에 사망했고, A일병의 자대 전입 한 달 후 부대생활 부적응을 확인해 병영생활상담관이 월 1회 정기적으로 상담했으며, 상담 결과에 따라 정신과 진료 및 보호관리 등급 상황과 함께 분대장과 분대원들이 관심을 기울여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부대는 “A일병의 자대 전입 후 가정과 연계한 병사 관리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나 부대에서 할 수 있는 다각적인 조치가 이뤄졌고, 대대장 등 16명이 A일병의 빈소를 찾아 유가족을 위로했으며, 지난 ○월 ○일 수방사 보통검찰부 수사 결과는 A일병이 개인적인 원인으로 자살했다는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피신청인은 ○년 ○월 ○일까지 위 반론보도문을 ○면에 보도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본문 활자는 조정대상보도의 본문활자크기와 같게 한다.
- 피신청인은 ○년 ○월 ○일 ○시까지 위 반론보도문을 인터넷 홈페이지 ○면 기사목록 상단 (5번째 이내)에 24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본문이 표시되도록 한다. 또한 조정대상보도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한다. 게재 후에는 기사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네이버와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사업자에게도 위 사항에 따라 이행한 반론보도가 표시된 조정대상보도를 전송한다.

**사례 22****2018서울조정1576 손배청구**

소비자의 제보 내용을 토대로 신청인 제품의 문제를 지적한 보도에 대해 반론 보도를 게재하고 조정대상보도 중 업체명, 일부 표현 등을 삭제, 수정한 사례

보도내용

- 인터넷신문사인 피신청인은 신청인 업체가 판매한 라텍스 매트리스를 구매한 소비자가 우연히 라텍스가 아닌 스펀지임을 발견했고, 업체 측이 말을 바꾸던 끝에 해당 소비자를 형사고소했으며, 한편 아르바이트생의 임금 체불 문제도 불거졌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다.

신청취지

- 이에 대해 신청인 업체는 업체명과 브랜드를 노출시킨 채 피신청인이 일방의 주장만을 전달했으며, 동의 없이 제품 및 공장 내부의 사진을 촬영하여 회사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조정결과

- 심리 결과 보도내용 중 신청인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을 수정하고, 임금 체불과 관련한 부분은 삭제하며, 소비자 제보에 대해서는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양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최근 '라돈' 검출 문제로 침대에 대한 불신이 높아진 가운데 지난해 여름 본지가 단독 보도했던 'A브랜드 가짜 라텍스 침대'에 대해 판매업체가 사실과 다르다고 문제를 제기해 진실공방이 불거졌다.

A브랜드 측이 보도와 관련해 반론을 제기해 오면서 본지는 사실관계 검증에 나섰다.

보도1년 만에 취재진이 다시 연락을 취한 피해 제보자 김 씨는 "라텍스인 줄 알고 산 침대가 스펀지인 것도 분통 터지는데 형사 고소까지 당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본지가 ○에 위치한 A브랜드의 공장에 직접 방문하는 등, 다양한 각도에서 재취재해 진실 여부를 들춰 보았다. 대체 그간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 제보자 김 씨가 주장하는 사건 전말

“구매한 지 3개월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침대 꺼짐 현상이 발견돼 A/S를 요청했다가 우연히 침대 커버를 벗겨봤는데 라텍스가 아닌 스펀지가 들어 있었어요. 색도 심하게 변해 있었어요”

지난해 본지를 통해 하소연한 제보자 김 씨는 다시 한 번 분통을 터뜨렸다. [중략]

“상담원은 A브랜드에서 판매하는 제품이 아니라고 했다가 영업팀장이 매트리스 상태가 많이 훼손되어서 모르겠다는 식으로 말을 바꿔나갔습니다. 그러더니 일을 크게 만들어서 교환을 못해 주겠다고 하며 형사 고발을 했어요.”

올 해 9월, 김 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중략]

◇ A브랜드 측 “단순 실수였고 오 배송 때문” 반박

업체와 취재 날짜를 잡았지만 “해외 출장을 가게 됐다” “공장에서 사고가 났다” “담당자가 다쳤다”는 다양한 이유로 연거푸 불발되면서 취재진이 결국 해당 업체의 공장에 기습 방문했다. [중략] 취재진이 소비자 분쟁 건에 대해 묻자, 오배송률이 높았다고 해명했다.

업체 직원은 “커버를 씌우면 내부 소재까지는 확인이 어렵다. 2017년에 직원들이 정비가 안 되어 있어서 오배송이 많았다”며 소비자의 거친 언행 때문에 처리가 안 됐다고 둘러댔다.

[중략] 업체가 고소를 취하겠다고 하지만 김 씨가 전해 준 수원지검 사건처분결과증명서에는 ‘혐의 없음’으로 처리해 소송까지 진행되지도 않았다. [후략]

조정성립 후 보도문

보도내용

본 인터넷 신문은 ○년 ○월 ○일자 [] 제목의 기사에서 소비자 피해제보 등의 내용을 보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해당 업체에서는 “다른 물품이 오배송 되었거나 소비자가 라텍스 매트리스 제품 특성을 오해한 결과”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피신청인 초기화면 기사목록 상단에 위 보도문의 제목을 24시간 동안 고정으로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위 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한다. 또한 24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의 하단에도 위 보도문을 이어 게재한다.
- 네이버와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사업자에게도 위 보도문을 전송한다.
- 피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 중 신청인 업체명 및 브랜드명이 노출되지 않도록 본문 내용 및 사진설명 중 해당 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한다.
- 본문 일부 삭제
 - “◇ 아르바이트생 임금 체불 문제도 불거져” 부터 “결국 매트리스 오배송 문제로 소비자와 다툼까지 벌이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았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된 교육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판매 업체의 과실이 단순 실수로 묵인하기에는 어려워 보인다.”까지 삭제한다.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 포함된 제품 및 신청인 업체 사진을 모자이크하는 것으로 수정한다.
 - 네이버와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사업자에게도 위 사항을 전송한다.



사례 23

2018충북조정62, 63(병합) 각 정정청구

대학의 재정상태 악화 등 부정적 보도에 대해 대학의 반론을 충실히 반영하여 게재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례

보도내용

- 지역 케이블방송사인 피신청인은 신청인 대학에 총장의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교육부 대학기본역량 진단에서 낙제점을 받는 등 재정적 압박이 높은 상황이라고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보도한 바 있다.

신청취지

- 이에 대해 신청인 대학은 총장 및 부총장 임명에 대한 내부 행정절차를 밟고 있으며, 법인 전입금의 규모와 비율이 도내 1위를 차지해 재정적 문제가 발생한 사실이 없고, 교육부의 역량진단은 최종 결과 발표가 나지 않았으며 정정보도를 청구하였다.

조정결과

- 조정심리 중 신청 취지를 방송과 인터넷에 반론보도하는 것으로 양 당사자 간 원만히 합의 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A대학교 B총장 권한대행의 임기가 이달 말 만료되는 가운데 인적 쇄신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A대는 최근 불법 기숙사 건축물의 이행강제금 50억여원을 부담하면서 재정압박이 높은 가운데, 안팎으로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A대학교 인적쇄신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총장 공백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입니다.

지난해 6월 C총장이 돌연사퇴한 뒤 대행직을 맡은 B 총장대행의 임기가 이달 말로 종료됩니다. 새로운 총장이 선출되면 물러날 예정이었지만, 아직 총장을 찾지 못했습니다.

〈전화녹취〉 A대학교 측 관계자 : “(총장권한대행은) 1년 임기로 결재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년은 지나셨는데 초빙교원이시고, 8월 31일자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계속 할 것이냐...”

부총장 역시 몇 달 전 임기가 끝났지만 여전히 출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학교 안팎의 악재가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단 점입니다. 올 초 불법 기숙사 건축물에 부과된 53억여원의 이행강제금을 부담하면서 재정적 압박이 높은 상황입니다.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 진단에서는 낙제점을 받아 정원감축이나 재정지원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큼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각에서는 인적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셉니다. [후략]

조정성립 후 보도문

보도내용

본 방송은 ○년 ○월 ○일 []라는 제목으로 A대학교 인적 쇄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총장 공백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이 있고 올 초 부과된 이행강제금 부담 때문에 재정적 압박이 높은 상황이며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 진단에서는 낙제점을 받아 정원 감축 등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A대학교는 총장 및 부총장 임명에 대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고, 부총장은 임기 만료 후 초빙교수로 재계약해 정상 출근하는 것이며, 학교의 법인전입금 규모와 비율은 매년 총복 4년제 대학 중 1위를 차지하는 만큼 재정에 문제가 없고 학내에서 인적 쇄신 요구에 관한 문제가 발생한 바 없으며 해당 보도 당시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 진단 평가에 대한 최종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피신청인은 조정이 성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항목들의 이행이 완료되도록 한다.
 - 피신청인 홈페이지 ○면에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최초 24시간 동안은 홈페이지 첫 화면에 나타내도록 한다. 단, 해당 정정보도문의 제목활자는 조정대상보도의 제목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본문활자크기는 조정대상보도의 본문활자의 크기와 같게 한다.
 - 조정대상보도의 본문 하단에도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 피신청인은 위 내용의 이행이 완료된 이후에도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홈페이지 뉴스면과 조정대상보도의 본문하단에서 계속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사례 24

2018서울조정1711 정정청구

신청인 제품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는 보도에 대해 관할 기관의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반론보도하기로 합의한 사례

보도내용

- 인터넷신문사인 피신청인은 모 음료에서 파리와 구더기가 나왔고, 음료 제조 업체에서 책임 회피로 일관했다는 소비자의 제보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신청취지

- 이에 대해 신청인 업체는 식약처의 조사 결과 해당 이물질이 제조공정상 들어간 것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소비자에게 성실하게 응대했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하였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식약처의 조사 결과 해당 이물질은 생산과정에서 들어간 것이 아니다
-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자세로 응대했다

조정결과

- 조정심리 중 조정대상보도의 제목을 수정하고 신청인 업체의 입장을 별도의 반론보도로 게재하며, 네이버포스트 및 유튜브에 게시된 조정대상보도의 열람·검색을 차단하기로 양 당사자간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A제약 ‘B음료’를 마시던 중 파리와 구더기가 나와 소비자를 경악하게 했다. 더불어 사태에 대해 책임회피로 일관해 소비자를 더욱 격분하게 만들어 고객대응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C씨는 지난 8일 본지에 B음료를 마셨는데 이물질이 느껴져 뱉었더니 파리가 나왔다고 제보했다. 더불어 남은 음료를 컵에 부었더니 구더기가 살아 움직이고 있어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날 오후 1시경 음료를 마셨고, 고객센터에 신고하니 오후 4시쯤 A제약 측 직원이 C씨를 찾아왔다. 하지만 C씨는 광동제약 직원들이 당장 사과보다는 책임회피를 일관하는 태도에 상당히 불쾌



했다는 전언이다.

A제약 직원은 “제작과정에서 들어갈 수 없고, 가열처리로 인해 파리가 들어가더라도 살 수가 없다”며 “먹는 도중에 들어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에 C씨는 그럼 꿈틀거리는 구더기는 뭐냐고 따지자 음료제작 중에 유입된 것이면 파리 날개도 타 없어졌을 거라고 반박했다는 것. 격분한 C씨는 바로 그 자리에서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를 보고 A제약 측은 “샘플을 전해줬으면 고급건강식품 주려고 했다”는 말을 했다. [중략] 현재 식약처에서 제품을 가져가 심의 중으로 결과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중략] 한편 이에 대해 A제약 관계자는 “제조공정상 발생할 수 없는 사안으로 관계기관과 절차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정성립 후 보도문

보도내용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월 ○일자 [] 라는 제목으로, A제약의 ‘B음료’ 제품에서 이물질이 나왔고, 업체 측이 해당 사안에 대해 책임회피로 일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A제약 측은 식약처에 문제된 사안에 대해 소비자가 민원을 제기했고, 이후 관할지역인 ○시 ○출장소 환경위생과의 카탈라아제 실험 결과, B음료에서 발견된 이물질들이 제조공정에서 혼입되었다는 객관적인 사실과 명확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내용의 공문이 확인되었다고 밝혀왔습니다.

더불어 업체 측은 문제 제기를 한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자세로 응대했다고 밝혀와 이를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피신청인은 ○년 ○월 ○일 ○시부터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의 제목을 []에서 []로 수정한다.
- 피신청인은 ○년 ○월 ○일 ○시부터 다음 항목들의 이행이 완료되도록 한다.



- 피신청인 홈페이지 ○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3번째 이내에 위 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고정으로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위 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피신청인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의 본문 하단에도 위 보도문을 박스 처리하여 게재한다.
- 네이버, 유튜브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아래 URL 주소들의 기사 및 동영상들을 모두 삭제한다. (URL주소 생략)
- 네이버와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사업자에게도 위의 사항을 전송한다.

**사례 25****2018서울조정1712, 1713(병합) 각 반론청구**

국가보훈제도의 맹점을 비판한 보도에 대해 국가보훈처의 반론을 반영하기로 합의한 사례

보도내용

- 시사주간지를 발행하는 피신청인은 군부대 자주포 폭발사고 피해자의 사례를 들면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에 대해 안내받지 못했고, 등록 절차가 매우 까다롭다는 취지로 지면과 온라인을 통해 보도한 바 있다.

신청취지

- 이에 대해 신청인인 국가보훈처는 전역 이전, 당일, 이후에 수 차례 안내하였고, 등록신청 또한 신청서와 부상경위서만 제출하면 되는 등 간단함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의 보도로 인해 보훈 제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게 되었다며 반론보도를 청구하였다.

〈신청인이 원하는 반론보도문 요지〉

- 자주포 폭발사고 피해자에게 등록신청 및 보훈제도를 설명하였다
- 전국 보훈관서 등록담당 공무원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 작성에 도움을 주고 있고, 절차가 간편하고 별도의 경비가 소요되지 않는다

조정결과

- 심리 결과 조정대상보도 중 제목을 수정하고 국가보훈처의 신청취지를 반론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양 당사자간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전략] 2017년 8월 ○군 육군 부대에서 일어난 자주포 폭발사고 피해자인 A 예비역 병장은 “국가 가 나를 버렸다”고 말했다. 3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은 큰 사고였다. 스위치를 누르지 않았는데 장약(추진 화약)이 터지면서 폭발이 일어났다. 이 병장은 부상자 4명 가운데 가장 크게 다쳤다. 전신 55%에 2~3도 화상 판정을 받았다. 안와골절로 시력도 크게 떨어졌다. A병장은 군병원을 거쳐 현재 화상전문 병원인 한강성심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중략]



뒤늦게 국가유공자제도를 알게 됐지만, 등록 절차 역시 쉽지 않았다. 사고 경위나 진단서 등을 피해자가 직접 구비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다. A병장의 어머니는 “피해자들은 치료에 전념해야 하는 상황에서 서류를 챙기는 것에도 어려움을 느낀다.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는 다친 장병들을 보면 거의 100만원씩 내고 행정사나 법무사에게 서류를 맡겨 진행한다”고 말했다. [중략] 이 병장 뿐만이 아니다. 기자가 만난 대부분의 군 사고 피해자들은 국가유공자나 보훈제도와 관련된 안내와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군대에서 사고를 겪었지만 보훈제도가 있는지도 몰라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광은 국가유공자 공상군경모임 대표는 “전역한 지 오래 지나 국가유공자 제도를 알았다’며 지금 신청해도 되는지 물어오는 군 사고 피해자들이 많다”고 말했다. [중략]

이렇게 국가유공자 등록을 뒤늦게 신청하거나 제도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군 사고 피해자들이 많지만, 군대나 군병원에서는 보훈제도에 대한 교육을 따로 실시하고 있지 않다. 안○○ 국가유공자 공상군경모임 서울 대표는 “병사들에게 보훈제도를 교육할 의무가 있는 장교나 부사관 등 간부들도 보훈제도를 모르는 게 현재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군 사고 피해자들 대부분이 국가유공자 제도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국방부 훈령 규정에 군과 군병원이 알리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군과 보훈처가 보훈제도를 안내하고 있다”며 “국가유공자 제도에 대한 홍보와 광고에 쓰는 예산이 제한적인 점은 있다. 더 많은 분들이 (국가유공자 제도에 대해) 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후략]

조정성립 후 보도문

보도내용

본지는 지난 ○년 ○월 ○일자 ○면에서 [] 제하의 기사에서, 국가보훈처가 軍 사고 피해자들에게 그 제도 및 혜택에 관한 적절한 안내를 하지 않고 있으며 보훈제도 적용을 위해 피해당사자들이 직접 상당한 비용을 들여 법무사 등을 통해 그 절차를 수행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보훈처는 자주포 폭발사고 피해자에게 전역 직후 직접 등록신청을 안내하고 치료



지원과 보훈제도를 설명하였으며 전국 보훈관서를 통해 군병원 등 보훈제도 설명회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국가보훈처는 모든 군 전역자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때 전국 27개 보훈관서의 등록 담당 공무원이 등록신청서 작성에 도움을 주며 ‘등록신청서’와 ‘부상경위서’만 제출하면 그 외 진료기록, 헌병대 사건조사보고서 등의 자료는 육군 등 소속기관으로부터 제출받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경비가 소요되지 않는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피신청인은 ○년 ○월 ○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 피신청인 홈페이지 ○면에 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기하여 게재하되 처음 24시간 동안에는 ○면 기사목록 초기화면에 노출하고 그 제목을 클릭하면 보도문 본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보도의 본문 하단에 보도문 제목과 본문을 이어서 게재한다. 또한, 처음 24시간 게재 후에도 보도문을 동일하게 기사DB에 보관하여 열람·검색되도록 한다.
 - 피신청인 홈페이지의 각 조정대상보도 제목을 「[“국가가 나를 버렸다” ①] 軍 사고 피해자 울리는 국가보훈제도」 및 「[“국가가 나를 버렸다” ②] 軍 사고 피해자 울리는 국가보훈제도」로 수정한다.
 - 네이버와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사업자에게도 위 각 호의 사항을 전송한다.



사례 26

2018서울조정2151·2152 반론·손배청구

신청인의 발언 내용을 일부만 발췌 보도한 데 대해 발언의 본래 취지를 반영한 반론보도를 게재하기로 합의한 사례

보도내용

- 지상파방송사인 피신청인은 키즈카페에서 제공된 케첩에서 구더기가 발견된 사건과 관련, 식약처 소속 공무원인 신청인과의 통화 내용을 녹음, ‘구더기는 뱃속에서 사멸한다’는 등의 발언을 발췌보도하였다.

신청취지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전체 발언내용 중 극히 일부를 발췌하고 취지를 왜곡함으로써 구더기가 들어간 음식물을 섭취하여도 문제가 없다고 발언한 것처럼 독자들이 오해하여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며 반론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신청인이 원하는 반론보도문 요지〉

- 살아있는 구더기는 식약처 규정상 보고대상이 아니고 해당 건은 이미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하여 행정처분이 진행중인 사안이었으며, 이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아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밝혀왔다

조정결과

- 중재부에서는 해당 통화내용 전체를 제출하도록 자료제출명령을 내렸고, 피신청인이 제출한 통화내용을 바탕으로 본래의 발언 취지를 구체적으로 반론보도하도록 양 측에 권유하였다. 심리 중 양 당사자는 피신청인 온라인 홈페이지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조정대상보도1

한 유명 키즈카페에서 준 토마토케첩에서 살아있는 구더기 수십 마리가 나왔습니다. 그걸 먹었던 아이와 엄마 모두 식중독 증상을 보였는데, 케첩 제조사와 키즈카페 모두 자기 탓 아니라며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걸 신고받은 식약처의 대처도 황당합니다.

토마토케첩 사이를 뭔가 꿈틀거리며 기어 다닙니다. 자세히 보니 흰색 구더기로 수십 마리나 됩니다. 지난 4일 장 모 씨가 4살 난 딸과 함께 경기도의 한 유명 키즈 카페에서 감자튀김을 찍어 먹던 일회용 토마토케첩에서 나온 겁니다. [중략]

하지만 식약처는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며 조사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 식약처 직원 : 소비자들이 기분 나빠할 수 있어도 (구더기는) 뺏속에 들어가면 거의 사멸하거든요. “살아 있는 이물질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식약처 규정을 근거로 내세웁니다.

▶ 식약처 직원 : 살아 있는 곤충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사를 해달라고 해도 그건 조사를 안 합니다.

식약처가 조사에 나서지 않자 키즈 카페와 케첩 제조사, 그리고 유통업체 모두 서로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며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후략]

조정대상보도2

한 유명 키즈카페에서 나온 케첩에서 살아있는 구더기가 나왔는데도 관련 업체들은 나 몰라라 하고 있고 식약처도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저희가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보도가 나가자마자 거센 비난이 쏟아졌고 식약처는 오늘 뒤늦게 조사에 나섰습니다.

한 유명 키즈 카페가 제공한 일회용 케첩에서 발견된 구더기 수십 마리.

감자튀김을 이 케첩에 찍어 먹었던 어머니와 4살 난 딸은 구토 등의 증상을 보여 치료받았습니다.

케첩 제조사가 식약처에 신고했지만 식약처는 조사조차 나가지 않았습니다. 규정상 음식물에 살아 있는 유충이 든 것은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 식약처 직원 : 소비자들이 기분 나빠할 수 있어도 (구더기는) 뺏속에 들어가면 거의 사멸하거든요.

보도가 나가자 인터넷에는 비난 댓글 수천 개가 쏟아졌습니다. [후략]



조정성립 후 보도문

보도내용

본지는 지난 ○월 ○일 및 ○일자 [] 제하의 방송 등에서 키즈카페에서 제공된 케첩에서 구더기가 발견된 사건에 대한 식약처의 입장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발언을 한 당시 식약처 직원은 “살아 있는 구더기는 식약처 규정상 보고대상이 아니고 보도 당시 해당 건은 이미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가 끝나 행정처분이 진행중인 사안이었으며, ‘뱃속에서 사멸된다’는 내용은 애벌레(구더기)를 식중독 발생의 원인으로 확정할 수 없다는 설명부분의 일부를 편집보도한 것이지 이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아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피신청인은 ○년 ○월 ○일 ○시에 다음 항목들의 이행을 완료한다.
 - 위 보도문 제목을 피신청인 홈페이지 접속시 최초로 나타나는 화면에 1주일 동안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보도문 본문이 표시되도록 한다.
 -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 홈페이지 DB에 보관하여 [] 섹션에서 검색되도록 한다.
 - 피신청인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들이 피신청인 홈페이지에서 검색되는 한 보도 본문 하단에도 위 보도문을 이어 게재한다.
 - 네이버, 다음 등 피신청인과 계약관계에 있는 각 포털사에 위 사항을 즉시 전송하여 포털에서도 위 사항들이 검색되도록 한다.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2018년도

**언론조정중재
사례집**